

# 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15.12.21. 규칙 제698호

개정 2020. 2.19. 규정 제81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의2에서 위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및 운영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교직원 2명, 학생 3명(대학원생 1명을 포함한다), 관련 전문가 1명, 학부모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② 교직원 위원은 교학처장과 사무국장으로 한다.

③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2명, 대학원 원우회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관련 전문가 위원은 경제·경영·회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학부모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책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책의 임용(재직)기간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
2. 기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4조(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·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 개최는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19>

**제4조의2(회의록 공개)**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<본조신설 2020.2.19>

**제5조(자료 요청 등)** ①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총장은 다음 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재무팀장이 된다.

**제7조(수당 등의 지급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세부사항)**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**부 칙(제698호, 2015.12.21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814호, 2020. 2. 19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